

[ 산업간호와 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2011. 7.24] [법률 제10371호, 2010. 7.23, 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범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른 법률에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여 시행 중이나, 아동 성폭력범죄는 정신적·사회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게 성욕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 주사를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약물 치료요법과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아동 성폭력범의 재범율을 현저히 낮춘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법원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하며, 약물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안 제8조).

라. 약물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약물치료명령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가중료·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법원은 약물치료를 계속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치료기간을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으나,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사.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약물치료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등의 신청을 받아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검사는 약물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성폭력 수형자 중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으로 약물치료명령을 고지하며, 수용시설의 장은 결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중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관은 가중료·치료위탁 또는 가출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

##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성폭력 수형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